의안번호	제 88 호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의결사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전홍표 · 권성현 · 김경수 · 김경희 · 김묘정 · 김상현 · 김영록 · 문순규 · 박강우 · 박선애 · 박해정 · 백승규 · 서명일 · 심영석 · 오은옥 · 이우완 · 이원주 · 이종화 · 정길상 · 정순욱 · 진형익 · 최은하 · 한상석 · 한은정 · 홍용채 · 황점복 의원
발의연월일	2022. 10. 19.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8

발의연월일 : 2022. 10. 19.

발 의 자 : 전홍표·권성현·김경수·김경희·김묘정·김상현 김영록·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해정·백승규 서명일·심영석·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종화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한상석·한은정 홍용채·황점복 의원(26명)

1. 제안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다.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4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마.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제19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현행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인”을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으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소득증대와 창원시 농업경제의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대표”를 “창원시 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를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5조로 하고, 제16조를 제20조로 하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농촌융

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앞에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를 삽입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창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인허가 지원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

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제19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포상)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창원시 농업경제의 발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생 략) 1. ~ 3. (생 략) 4.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창원시 대표 ----------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 때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 ----------. ---------- ---------- ---------- ---------- ---------- ----------.
<신 설>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

	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 <신 설>	<삭 제>
제8조 ~ 제15조 (생 략)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 제9조 ~ 제16조 (현행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17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창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인허가 지원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 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신 설>	제19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3조(포상)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신 설> 제19조·제20조 (생 략)	<삭 제> 제5장 보칙 제24조·제25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시·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시·도계획"은 "시·군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⑦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

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또는 자금을 보유한 중소기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중소기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4의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경상남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5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법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으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 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거리의 환산) 제5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 집수구역 및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의 시행,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창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전문가
3. 관련 분야 4급 이상의 공무원

제10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으며,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소집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16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 ·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판로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 · 판매 또는 사후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 ·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 · 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대학 ·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063호, 2018.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전홍표 의원)**

1. 의회사무국-8910(2022.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정 개요**

조 례 안	부 서 검 토 의 견	발 의 자
창 원 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련법령 저촉여부 : 해당없음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창원시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나, 일부 상위법령 재기재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전 홍 표 의 원

붙임 부서검토보고서 등 각 1부. 끝.

창 원 시 장

주무관	**이고은**	주무관	**강혜영**	정책기획관	전결 2022. 10. 14. **홍순영**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10550 (2022. 10. 14.) 접수 의회사무국-9739 (2022. 10. 14.)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정책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goni07@korea.kr / 비공개(5)

요 약 서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 **조례안 개요**

○ **조례안명** :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정시기** :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발 의 자** : 창원시 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

○ **제안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안 제8조) 및 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안 제21조)을 신설

□ **검토 내용**

○ 상위법 저촉 여부 : 저촉사항 없음

○ 주요 검토의견

- 안 제8조(「국계법」에 대한 특례)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 허용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

2.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

➜ 【추가】 3.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근 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제2항

- 안 제18조(농촌여성 지원)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 관련 자금·교육 등 지원

➜ 【삭제】 상위법령에 지원사항 포함, 특정대상을 정할 실익 없음

- 안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기존 조례와 중복 또는 상위법령 재기재로 삭제

□ **종합의견 : 조례 개정안 일부 수정**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전홍표 의원 발의 예정인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Ⅰ 개 정 개 요

관련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주요내용

- 조례안명 :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정시기 :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발 의 자 : 창원시 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
- 제안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개정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정의를 정비하고 여성농업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4조)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지역 및 건축 허용규정 및 원상회복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9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제21조)

Ⅱ 검 토 내 용

❑ 상위법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의3

◉ 법령검토

-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단서 조항에 위반되지 않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례)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저촉도 없음.

❑ 재정부담

◉ 해당없음

❑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제정 현황 : 63개 지자체(광역 11, 기초52)

구 분	자치단체명
광역자치단체	강원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가평군, 강릉시, 고흥군, 공주시, 광주시, 구례군, 김제시, 김천시, 나주시, 남양주시, 남원시, 담양군, 달성군, 문경시, 밀양시, 보성군, 봉화군, 부여군, 삼척시, 서산시, 성주군, 순천시, 신안군, 아산시, 안성시, 여수시, 여주시, 예산군, 옹진군, 완도군, 울주군, 인제군, 장성군, 장수군, 장흥군, 전주시, 정읍시, 진도군, 진안군, 진주시, 진천군, 천안시, 철원군, 춘천시, 태안군, 평택시, 포항시, 함안군, 함양군, 홍성군, 화성시, 화천군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안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검토의견 : 수정(상위법령 제1항제3호 추가)

- 제2조(정의)에서 정의된 구체적 용어 사용
- 상위법령에 기재된 건축 허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준용함이 바람직하고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제2항, 제3항에 같은 조항이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은 없으나 농업인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타조례와 상충되므로 동일하게 수정

안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삭제

- 당초 조례 제6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제한)와 중복

안 제9조(원상회복)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삭제

- 상위법령 재기재

- 제18조(농촌여성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삭제

– 상위법령에 금융, 홍보, 교육, 창업 등에 관한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특정 지원대상을 정할 실익이 없음

- 안 제19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20조(창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인허가 지원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
  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 검토의견 : 삭제

– 상위법령 재기재

- 나머지 조문은 원안과 동일 의견이므로 검토의견 없음

Ⅲ 종 합 의 견

❑ 상위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부서의견 : 조례 개정안 일부 수정

- 본 조례안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함.
- 단, 타조례에 이미 있는 조항은 동일하게 수정하고 상위법령 재기재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요약서 1부.
2. 의원발의 조례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농촌여성 지원(안 제18조)

❍ 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안 제 2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에 예상되는 재정부담은 최근 3년(2020, 2021, 2022년)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상 예산에 근거하여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정됨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11,200	600	600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과장 서혜영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전홍표 의원)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 10. 07.(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사항 :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상 정 시 기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정책지원관 **전혜림** 입법예산담당 **유정호** 의회담당관 **최진호** 대결 2022. 9. 23. 의회사무국장 전결

협조자 전문위원 **이종덕**

시행 의회사무국-8910 (2022. 9. 23.)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용호동) / http://council.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5 팩스번호 055-225-4743 / jeonhr1@korea.kr / 비공개(5)

붙 임 **검토의견 조회안**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발 의 자 : 전홍표 의원

1. 제안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정의를 정비하고 여성농업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4조)

마.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지역 및 건축 허용규정 및 원상회복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9조)

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현행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인”을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으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소득증대와 창원시 농업경제의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대표”를 “창원시 대표”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

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8조 앞에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를 삽입한다.

제18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농촌여성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창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인허가 지원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
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제21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창원시 농업경제의 발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② (생 략) 1. ~ 3. (생 략) 4.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창원시 대표 ---------- 5.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

	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원상회복)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삭 제>

정책협의회	
<신 설>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정책협의회
제8조 ~ 제13조 (생 략)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제14조·제15조 (생 략)	제16조·제17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신 설>	제18조(농촌여성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창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인허가 지원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 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신 설>	제21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19조·제20조 (생 략)	제25조·제26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